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7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강선우·정준호·이재관

한병도 • 한정애 • 윤준병

서미화・김 윤・김민석

김윤덕 • 허종식 • 허 영

서삼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

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1. ~ 6. (생략)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 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u> ·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개 정 안

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
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
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
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다.

- 1. ~ 6. (현행과 같음)
- ② <u>시장</u>-----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